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59

발의연월일: 2023. 4. 6.

발 의 자:문진석・김병욱・위성곤

이정문 • 김병기 • 김두관

최혜영 • 이성만 • 서영석

송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재난안전관련 평가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 등을 제·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재난안전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하고 해당 법령 및 계 획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3조의4에 따른 법령등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법령등안전영향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
- 규칙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이하 "법령등"이라 한

다)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 및 분석ㆍ검토(이하

"법령등안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법령등안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사고 유발의 가능성
- 2. 안전확보의 실효성
- 3. 법령등의 실행 가능성
- 4. 행정절차의 투명성
- ③ 법령등안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3조의4에 따른 법령등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법령등안전영향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대 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률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안 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평가 및 분석·검토(이하 "법령등안전영향평가"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법령등의

<u>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u> <u>고할 수 있다.</u>

- ② 법령등안전영향평가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사고 유발의 가능성
- 2. 안전확보의 실효성
- 3. 법령등의 실행 가능성
- 4. 행정절차의 투명성
- ③ 법령등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